

판로지원

판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

신청시기 : 연중수시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전담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 지원대상

구분	신청 자격
창업과제	(기업)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구분	신청 자격										
일반과제	(기업)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품)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1eef6;"> <th style="width: 15%;">구분</th> <th>계약실적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제품군A</td> <td>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3억원 이하</td> </tr> <tr> <td>제품군B</td> <td>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9억원 이하</td> </tr> <tr> <td>제품군C</td> <td>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5억원 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계약실적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제품군A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3억원 이하	제품군B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9억원 이하	제품군C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5억원 이하		
구분	계약실적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제품군A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3억원 이하										
제품군B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9억원 이하										
제품군C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5억원 이하										
<p>◆ 제품군이란?</p> <p>- 세부품명번호(10자리 숫자)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을 말하며, 시범구매제도 자격요건 중 기술개발제품 계약실적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적용</p>											
소액과제	(기업)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1eef6;"> <th colspan="2">기업 구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①</td> <td>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td> </tr> <tr> <td>②</td> <td>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td> </tr> </tbody> </table>	기업 구분		①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②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기업 구분										
①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②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제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1eef6;"> <th colspan="2">제품 구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①</td> <td>「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td> </tr> <tr> <td>②</td> <td>「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td> </tr> <tr> <td>③</td> <td>「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 발명품</td> </tr> <tr> <td>④</td> <td>「판로지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상생협력제품</td> </tr> </tbody> </table>		제품 구분		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②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③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 발명품	④	「판로지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상생협력제품
제품 구분											
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②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③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 발명품										
④	「판로지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상생협력제품										

■ 지원내용

-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 지원과제

구분	지원 내용
창업과제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지원
일반과제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지원
소액과제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개척 지원 *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기업

■ 신청가능 시범구매 대상제품

연번	인증·지정명	소관부처 창업	신청가능 과제			
			일반	소액	소액	
1	성능인증	중소벤처기업부	○	○	○	
2	우수조달물품	조달청	○	○	○	
3	NEP(신제품인증)	산업통상자원부	○	○	○	
4	GS(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5	NET 신 기술 인 증 적 용 제 품	과학기술	산업통상자원부	○	○	○
		환경	환경부	○	○	○
		건설	국토교통부	○	○	○
		재난안전	행정안전부	○	○	○
		목재	산림청	-	-	○
		농림식품	농림축산식품부	-	-	○
		농업기계	농림축산식품부	-	-	○
		교통	국토교통부	-	-	○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	-	○
		해양수산	해양수산부	-	-	○
물류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	○		
6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청	○	○	○	
7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중소벤처기업부	○	○	○	
8	재난안전제품인증	행정안전부	○	○	○	
9	혁신제품	조달청 등	○	○	○	
10	녹색기술제품	산업통상자원부 등	-	-	○	
11	산업융합 혁신품목	산업통상자원부	-	-	○	
12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산업통상자원부	-	-	○	

연번	인증·지정명	소관부처 창업	신청가능 과제		
			일반	소액	소액
13	물산업 우수제품등	환경부	-	-	○
14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조달청	-	-	○
15	우수발명품	특허청	-	-	○
16	상생협력제품	중소벤처기업부	-	-	○

[과제 비교]

구분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기업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제품	· 기술개발제품 9종	· 기술개발제품 9종 · 제품군별 계약실적으로 신청 제한	· 기술개발제품 13종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우수발명품 · 상생협력제품
평가 절차	자격검토→규격검토→구매평가→구매심의→제품선정	자격검토→구매평가 →구매심의→제품선정	자격검토→구매평가 →구매심의→제품선정
구매 방식	구매기관이 적용 받는 계약 규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요에 따라 구매 ※ 단, 선정 과제 별 공공기관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이 상이함에 유의		

■ 지원규모

-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 (구매기관 현황) 523개 기관 참여 (23.6월)

(단위: 개)

행정기관(265)				공공기관(258)					합계
국가 기관	지자체	국가 의료원	시도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지방 의료원	
18	245	1	1	32	54	59	111	2	523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① SMPP 로그인
 - ② 제도신청
 - ③ 시범구매제도
 - ④ 시범구매신청

■ 문의처

-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 (smpp.go.kr)
- 중소기업유통센터 콜센터 (☎ 1533-0092)
-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팀 (☎ 042-712-5621, 5622, 5624, 5626, 5629)

판로지원

판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

신청시기 : 연중수시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전담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 지원대상

- '22~'24(3년간) 적용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연번	제품명	인증설명
1	성능인증 (중기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2	우수조달물품 (조달청)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
3	GS시험인증 (과기정통부)	정부가 SW의 품질을 보장하여 SW업체의 판로지원
4	신제품(NEP) (산업부)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시작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품
5	신기술(NET) (산업부 등 9개부처)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및 기술거래를 촉진
6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중기부)	민·관, 대·중소기업, 수탁·위탁기업 간 수요와 연계된 기술개발제품 지원(구매조건부 신제품, 민관공동투자기술, 성과공유과제 성공품)
7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청)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물품
8	녹색기술제품 (산업부)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